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88 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노종면·허성무·김동아

홍기원 · 김교흥 · 박상혁

조인철 · 서영석 · 윤건영

김윤덕 • 정을호 • 조정식

정동영 · 정일영 · 유동수

허종식 · 소병훈 · 이정헌

이훈기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 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 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

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3항 중 "개방주차장(이하 "개방주차장"이라 한다)으로"를 "개방주차장(이하 "개방주차장"이라 한다) 또는 공영주차장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"개방주차장을"을 "개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15항 중 "개방주차장의"를 "개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 중 "개방주차장의"를 "개방주차장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 중 "개방주차장의"를 "개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)	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)
① ~ ⑫ (생 략)	① ~ ⑫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	(13)
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	
요한 경우 공공기관, 그 밖에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	
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	
수 있는 개방주차장(이하 "개	<u>개방주차장(이하 "개</u>
<u>방주차장"이라 한다)으로</u> 지정	방주차장"이라 한다) 또는 공
할 수 있다.	<u>영주차장으로</u>
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	14
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	개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-
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	
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	
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	
다.	
⑤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	15
제13항에 따라 지정된 <u>개방주</u>	<u>개방주</u>
<u>차장의</u> 위치, 개방시간 및 주차	차장 및 공영주차장의
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	
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	
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	

보하여야 한다.	
① <u>개방주차장의</u> 지정에 필요	16 개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
한 절차, 개방시간, 보조금의	<u>의</u>
지원,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	
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	
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	
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